

2021년도 제1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5. 20.(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1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62건(안건번호 제2021-53325호~5467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53325호~53340호(순번 1번~16번), 53737호(순번 413번), 54576호(순번 1252번), 54577호(순번 1253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와 출판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만화와 출판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53341호~53359호(순번 17~35번)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해외 영상물(방송)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53653호(순번 329번), 53654호(순번 330번), 53657호(순번 333번), 53659호(순번 335번), 53660호(순번 336번)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클래식 음악 불법복제물을 웹하드를 통해 전송한 사안으로, 이미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53651호(순번 327번), 53652호(순번 328번), 53655호(순번 331번), 53656호(순번 332번), 53658호(순번 334번), 53667호(순번 343번), 53670호(순번 346번)는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음악을 웹하드를 통해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확인되

지 않아 불법복제물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53360호~53650호(순번 36번~326번), 53661호~53666호(순번 337번~342번), 53668호~53780호(순번 344번~456번), 53671호~53736호(순번 347번~412번), 53738호~54575호(순번 414번~1251번), 54578호~54677호(순번 1254번~1353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2,26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1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36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353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16번, 413번, 1252번, 1253번은 실명(5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와 출판물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 '○○○○○', '△△△△△', '□□□□□' 등 11건과 출판물 '●●●●●', '▲▲▲▲▲', '■ ■ ■ ■ ■' 등 8건을 각각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9개 게시물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6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화~제89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413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화~제760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16번, 413번, 1252번, 125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출판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6번, 413번, 1252번, 1253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7번~35번은 민원인(실명 1명, 익명 1명)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와 카페에서 미국 애니메이션(방송) '☆☆☆☆☆'과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 등을 우리말 자막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53개의 게시물임.
-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의 제1화~제10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3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의 제5기 제7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33번, 35번 게시물의 경우 2021. 5. 14. 기준 비공개로 전환된 것이 확인됨.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 삭제·전송중단된 경우와 달리 시정권고의 대상인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서로이웃을 맺은 범위의 공중에게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 언제든지 전체공개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7번~35번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경우,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기타 불법복제물에 대해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적발된 경우만 삭제되고 있음. 게시자들은 아이디 변경 또는 서로이웃 공개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다만 보호원이 해당 블로그에 대해 시정권고를 계속하면 OSP가 약관에 따라 해당 블로그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게시자가 제공하는 불법복제물 전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7번~35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27번~336번, 343번, 34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27건).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
♣♣♣(1827년 사망) 및 ●●●●●●●●(1828년 사망)의 저작물을 실
연한 음원을 웹하드를 통하여 복제·전송한 건으로, 원 음반은 신탁
관리단체인 ○●●●●●○에서 보호를 요청하였음.

(순번 329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0캐시에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제공함.

(순번 33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캐시에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제공함.

(순번 336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캐시에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제공함.

(순번 343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캐시에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제공함.

각 음원의 실연자는 순번 335번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음(Various
Artists 등으로 표시). 한편 사무처의 확인 결과 모든 안전 게시물들
은 2021. 5. 18. 기준 웹하드에서 삭제되었음.

각 음악저작물은 특별한 검토를 요하지 않는 공유저작물이나, 실연
자의 권리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즉 각 저작인접권은 별도로 보호받
음.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
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그의 음반을 복제, 배포, 대여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시정권고가 보호하고자 하
는 권리의 주체로 볼 수 있음.

다만, 일부 안전의 경우 심의안전의 원저작물과 복제물이 동일한 저
작물임을 소명할 수 없음. 순번 329번, 330번, 333번, 335번, 336번의
5개 안전은 원저작물인 음반과 동일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음을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7개 안전의 경우

다른 음반에 수록된 음원이거나 수록된 음반 자체를 특정할 수 없음.
실연자가 불명확한 클래식인 경우 어떠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도 없는 완전한 공유음원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는 클래식 음원의 경우 불법복제물로 단정하기 어려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순번 329번, 330번, 333번, 335번, 336번의 5개 안전에 대하여는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이외의 7개 안전(순번 327번, 328번, 331번, 332번, 334번, 343번, 346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27번~336번, 343번, 346번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예를 들어, 순번 332번의 경우 원저작물과 채증된 저작물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에서 보호 요청한 특정 음반의 수록곡과 보호원이 채증한 자료에서 보이는 음원들이 같다고 보기 어

렵다는 것임.

- B 위원: 해당 게시물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므로 '저작물'이라기 보다는 '음반' 또는 '인접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 오진해 전문위원: '음반' 또는 '실연물'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해당 안전에 대해 보호원 모니터링 부서에서는 ○●○●○●○●○에서 보호 요청한 저작물과 보호원 모니터링한 게시물이 같다고 보았는데, 사무처에서 비교해보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모니터링한 게시물이 보호 요청 받은 음반의 수록곡과 같은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려움. 해당 게시물에는 음반사나 실연자 정보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음.
- B 위원: 양자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기보다는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동일한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음.
- B 위원: 음원 하나 하나가 별개 음반이므로 개개의 음반을 기초로 음반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일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음반은 저작권법상 음반의 집합물(compilation)로 보아야 함. 음반의 수록 시간 등을 통하여도 동일 음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지?

- 오진해 전문위원: ○○○○○○에서 보호 요청한 순번 329번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2분 43초, 순번 332번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2분 50초로 음반의 수록 시간이 동일하지 않음.
- C 위원: 게시물이 모두 채증 이후에 삭제가 되었는데, 보호원이 채증한 사실을 게시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시정권고 전까지 불법복제물 게시자는 모니터링 여부를 알 수 없음. 게시자 본인이 스스로 삭제했을 수도 있고, ○○○○○○에서 권리 행사를 했을 수도 있음.
- A 위원: 웹하드에 게시된 이상 음반사를 특정할 수는 없더라도 누군가의 저작물을 복제한 불법복제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클래식 음악의 경우 실연권까지 만료된 곡들이 의외로 많음. 따라서 해당 음원이 공유저작물일 가능성도 있음.
- B 위원: 싸잡(shazam) 앱을 이용하면 누구의 저작물인지 확인은 가능하겠으나, 보호원의 모니터링 업무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B 위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5개 안건에 대하여는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고, 이외의 7개 안건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복제물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

고의 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이견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29번, 330번, 333번, 335번, 336번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순번 327번, 328번, 331번, 332번, 334번, 343번, 346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6번~326번, 337번~342번, 344번~456번, 347번~412번, 414번~1251번, 1254번~135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바퀴 달린 집'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69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바퀴 달린 집'을 95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5화 전체분량 1시간 27분 15초를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1. 4. 9.부터 매주 방송 중임.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을 유랑하며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하루를 살아보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프래미싱 영 우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89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프래미싱 영 우먼'을 27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50분 1초를 제공하고 있음. UPI코리아에서 2021.

2. 24. 공개한 미국 영화임. 7년 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한 비극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카산드라'(캐리 멀리건)가 친구를 위해 완벽하고 치밀한 복수를 실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36번~326번, 337번~342번, 344번~456번, 347번~412번, 414번~1251번, 1254번~135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36번~326번, 337번~342번, 344번~456번, 347번~412번, 414번~1251번, 1254번~1353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6번~326번, 337번~342번, 344번~456번, 347번~412번, 414번~1251번, 1254번~135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3651호(순번 327번), 53652호(순번 328번), 53655호(순번 331번), 53656호(순번 332번), 53658호(순번 334번), 53667호(순번 343번), 53670호(순번 346번)는 부결함. 제2021-53653호(순번 329번), 53654호(순번 330번), 53657호(순번 333번), 53659호(순번 335번), 53660호(순번 336번)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53325호~53340호(순번 1번~16번), 53737호(순번 413번), 54576호(순번 1252번), 54577호(순번 1253번), 53360호~53650호(순번 36번~326번), 53661호~53666호(순번 337번~342번), 53668호~53780호(순번 344번~456번), 53671호~53736호(순번 347번~412번), 53738호~54575호(순번 414번~1251번), 54578호~54677호(순번 1254번~135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27.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